

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산업재해조사표 예외규정 정비(안 제73조)

가. 개정 이유

- 법 개정('21. 8. 17.개정, '22. 8. 18.시행)으로 기술지도 계약 의무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현행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의 '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'는 법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명확히 하였으므로 '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인'으로 조문을 정비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관련 법 조항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2.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신청제도 개선(안 제161조 및 별지제 62호·제63호)

가. 개정 이유

- 현재 제조·수입자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'비분류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' 대체서류로 국외제조자로부터 받은 LoC*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,

* LoC(Letter of Confirmation):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

- 국외제조자로부터 화학제품 내 비분류물질 구성정보를 LoC로 제공 받은 경우는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신청이 불가능함에 따라,
- 이러한 경우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신청제도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'비분류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'을 대신하여 '제104조의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 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'를 대체 자료로 인정하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절차 현실화를 통한 제도 이행력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3.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마련(안 제194조의2 및 별표21의2)

가. 개정 이유

- 법 개정('21. 8. 17.개정, '22. 8. 18.시행)으로 사업주에게 근로자(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)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과(법 제128조의2 제2항)하고 제재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,
 -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설치·관리 수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된 시행규칙에 마련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, 온도, 조명 등 설치·관리 기준*을 규정하고,
* (크기 및 위치) ①최소면적은 6㎡ 이상, 천장고 2.1m 이상 확보, ②근로자의 휴식 주기, 남녀 및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적정 면적 확보, ③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, 다만, 화재·폭발 위험, 분진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
(온도, 습도, 조명, 환경) ①온도는 여름철 20~28℃, 겨울철 18~22℃(냉난방 기능 구비), ②습도(50~55%) 및 조명(100~200Lux)을 유지하도록 기능을 갖추고, 환기 가능하고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
(비품 및 설비)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 구비
(휴게시설 관리) 관리 담당자 지정, 청결 유지, 표지판 설치 등

- 작업장 특성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부 기준을 적용 제외**함

- ** ① 사업장 전용면적이 300㎡ 미만으로 협소한 경우, 크기 및 위치 기준 적용 제외
②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는 등 작업장 특성에 따라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, 온도·습도·조명·환경 기준 적용 제외
③ 옥외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, 습도기준 적용 제외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설치·관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없음

4.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선(안 별표5)

가. 개정 이유

- '14년부터 실시해 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시행 이후 변화한 산업현장 및 사망사고 추세, 법령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,
- 건설업에서 처음 일하는 근로자의 특성과 최근 사망사고 발생 추세, 법령 개정 사항들을 고려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을 개편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교육대상 구분을 삭제하고, 교육내용에 건설공사의 교육 및 시공절차 교육(1시간)과 주요 사망사고 유형별 위험요인·예방교육(2시간), 안전보건 관리체제 및 근로자 권리·의무 교육(1시간)을 추가하여 내용을 개편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건설업에서 처음 일하는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실시로 건설현장 재해예방 효과 제고에 기여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5.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·확인업체 기준 개선(안 별표11)

가. 개정 이유

- 현행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제재규정이 부재하여,
 -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사전 심사 및 이행 확인을 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자체심사·확인업체 시공현장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거나,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'자체심사·확인업체'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, 그 지정 제외를 명문화 하여 현행 제도상 불합리를 개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6.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유해인자 CAS-번호 정비(안 별표24)

가. 개정 이유

- 특수건강진단·배치전건강진단·수시건강진단 검사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24에서 유해인자 고유번호(CAS-No)에 단수 오류 정비

나. 개정 내용

- 화학적 인자 중 13번 디메틸포름아미드, 21번 1,2-디클로로에틸렌의 CAS번호 정비*

* (현행) 13. 디메틸포름아미드(Dimethylacetamide; 127-19-5), 21. 1,2-디클로로에틸렌(1,2-Dichloroethylene; 156-59-2 등)
→ (개정) 13. 디메틸포름아미드(Dimethylacetamide; 68-12-2), 21. 1,2-디클로로에틸렌(1,2-Dichloroethylene; 540-59-0 등)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오류 정보를 명확히 정비하여 혼란을 예방하고, 기준 실효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7. 전산누락 지도기관 처분규정 신설(안 별표26)

가. 개정 이유

- 현행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실시할 경우 전산시스템 발급 계약서를 사용하고, 지도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나 동 의무를 미이행 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,
 -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동 의무 미이행 시 처분기준을 마련

나. 개정 내용

- 전산시스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, 계약체결 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* 신설

* 1·2차 위반: 영업정지(3~6개월), 3차 위반: 지정취소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전산시스템 발급계약서 미사용 및 지도결과 미입력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술지도 계약 전산입력 누락 방지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기술지도의 질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8.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서식 개선(안 별지 제2호·제3호서식)

가. 개정 이유

-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등 선임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, 제3호(건설업) 서식의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등 선임 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,
 -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보고서 양식(별지 제2호, 제3호)에는 생년월일 관련 기재란이 없어 동명이인 확인이 어려움
 - 이에 선임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(건설업은 사업개시번호)을 추가하여 신고서만으로도 각 자격자와 사업장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서식에 '생년월일', '사업자등록번호' '사업개시번호' 기재항목 추가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만으로도 자격자, 사업장 및 공사현장 중복 여부 쉽게 확인 가능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효과 증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